

선거관리 규정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맹 및 지역본부의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연맹(지역본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맹(지역본부)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를 각각 둔다.

② 연맹 선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계속해서 만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③ 지역본부 선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계속해서 만3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④ 선관위의 위원장은 이사회(지역본부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연맹선관위 위원은 에리어(area) 별로 1명씩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지역본부 선관위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선관위 사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사무총국(지역본부 사무국)의 직원이 되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3 조 (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당해 선관위의 의장이 되며 연맹(지역본부)선관위는 연맹(지역본부)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총회 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상정되었을 때 의장이 된다.

③ 선관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거임무를 수행한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의
3. 투표용지 및 용품의 결정
4. 선거공보물의 발송
5. 선거 방법

6. 투·개표 시간 결정

7. 개표 및 당선자 확정과 발표

8. 기타 선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선관위 의결방법)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 조 (선관위의 성격과 임기)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선거사무를 집행하며, 당해 선거사무가 시작되는 날부터 당선자 확정 발표일 까지만 존속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업무 종료 시 까지 존속한다.

제 6 조 (선관위 금지사항) ① 특정 후보를 후원, 방해하는 등 선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관위 위원은 연맹(지역본부)의 다른 직무와 겸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선거일정)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관위 구성 : 선거일 60일전
2. 선거 공고 : 선거일 50일전
(선거일, 후보 등록 기간, 구비 서류 명시)
3. 후보 등록 : 선거일 20일전
4. 공보 발송 : 선거일 7일 이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과 인터넷공지로 할 수 있다.
5. 재공고의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임시총회(보궐선거)는 선거일정을 1/2로 적용한다.

제 3 장 입 후 보

제 8 조 (입후보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② 당해 임기 말까지 정회원 회비가 완납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 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 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아마추어무선국 허가 실효, 운용정지 등을 당하고 재허가, 재개국이 확정된 날부터 만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지역본부(지부 포함)의 운영에 관계되는 직무를 하는 자는 이사장직에만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9 조 (입후보 등록 서류) ① 연맹(지역본부)의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일시까지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2. 아마추어무선국 허가증 사본 1통
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속해서 만 3년 이상 및 당해 임기 내 회비 완납 증명된 경력증명서 1통
4. 별지 제3호 서식(1) 및 별지 제3호 서식(2)에 의한 입후보 소견서 1통
5. 주민등록 등본 1통
6. 계속해서 만2년 이상 정회원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이사장 100인, 부이사장 50인, 이사 30인, 감사 30인 이상, 지역본부장은 각 지역본부 선거관리 규정에 준하며 추천인 1인은 임원의 정수 이상 다수 추천 서명 시 추천 모두를 무효로 한다)
7. 재산세 납입증명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타인 재정보증서 1부 또는 보증보험증서 1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지역본부장 입후보자에 한하며,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의 타인 재정보증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30개월 보증보험증서)
- ② 입후보자가 등록 후 이를 취소하거나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0 조 (입후보자 준수사항) 입후보자, 동예정자 및 후견인은 선거 30일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거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 이외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유인물, 현수막, 어깨띠, 명함, 유무선 통신 및 전자문서 발송 등)
2. 선거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방문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3. 선거를 목적으로 후원금 또는 찬조금을 출연할 수

없다.

4. 선거를 목적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하여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격 사유 발견 시.
2. 등록 후 무선국 허가실효, 회원자격정지 또는 회원 자격상실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대상 입후보자.

제 12 조 (당선의 취소) 제10조의 입후보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선을 취소한다.

제 4 장 선출방법

제 13 조 (투표용지 배부) ① 투표용지 배부 시에는 등록된 투표권자를 호명하여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투표권자임을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배부한다.

② 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정 용지의 기표란 중앙에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기구를 사용하여 정확히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 14 조 (선출 방법) ① 모든 선출직 임원의 선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본부는 소속 지역본부 총회의 의결된 규정으로 할 수 있다.

② 후보등록 기간 중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된 자는 14일 이내에 제9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독출마의 경우에는 찬반의 의사를 묻는다.

제 15 조 (투표시간) 투표 시간은 선관위 위원장이 결정하여 공표 한다.

제 16 조 (개 표) 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하여야 하며,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과 선관위원으로 구성된 개표 요원으로 하여금 개표, 검표 및 집계 작업토록 한다.

② 검표원은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와의 부합과 유효표 및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여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유무효표의 판단에 있어 당락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17 조 (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한다.

1. 선관위에서 지정한 투표용지나 투표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 하지 않은 것.
3. 1인을 선출하는데 2인 이상의 난에 각각 표시한 것.
4. 정수를 초과 또는 미만하여 표시한 것.
5. 상하 좌우 구획 선상에 물린 것.
6. 기타 무효라고 인정하여 선관위가 결정한 것.

제 5 장 당선확정

제 18 조 (당선자의 결정) ① 이사장(지역본부장)은 유효 투표수의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 ② 기타 선출직 임원은 유효 투표수의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 ③ 단독출마의 경우는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 ④ 당선이 결정되면 선관위 위원장은 즉시 그 당선을 선포 하여야 하고 선포 즉시 당선직은 유효하다.

제 19 조 (이의신청) ① 투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결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입후보자가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관계 증빙서류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 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일부무효, 이유 없음 처분)
- ③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이사회 의결 직후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 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